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 정세분석국 내 빅데이터팀, 인도협력국 내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신설하고, 분장 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하며, 인도협력국 내 인도협력기획과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의 별표를 수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3·4급 1명, 4급 6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 총액인건비제팀 신설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 및 경제사회분석과를”을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사회분석과 및 빅데이터팀을”로,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기획
2. 북한 빅데이터 H/W 인프라 관리 운영
3. 북한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운영
4. 북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 개발 운영
5. 북한 빅데이터 시스템 거버넌스 구축·운영
6. 북한 데이터 품질관리
7. 내부 분석포털 및 대외 북한정보포털 관리
8. 북한정보 데이터 수집·변환·구축
9. 북한관련 빅데이터 모니터링 및 통계분석
10. 북한자료 이미지·음성·영상·텍스트 분석 활용지원
11. 북한 위성영상 등 공간정보 판독·평가 지원

12. 북한분석 모델 및 빅데이터 기반 대민서비스 개발

제8조제2항 중 “인도협력기획과·북한인권과·이산가족과·정착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인도협력기획과·북한인권과·이산가족과·정착지원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및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민간단체 및”을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2. 북한이탈주민 위기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3. 북한이탈주민 위기대상자 상황관리 총괄
4. 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예방
5. 북한이탈주민 위기감지 지표 발굴·운영
6. 북한이탈주민 위기대상자 여부 판별 체계 운영
7.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관련 실태조사
8. 북한이탈주민 긴급생계비·의료비 신청 지원,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 관리
9.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사례관리위원회 운영
10.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11.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원 및 거주

불명 조사

12.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과 관련된 신변보호담당관 협조체계 구축

· 운영

1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소통·교류 지원

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

응센터 운영 관리

15. 북한이탈주민 폭력 등 피해자 상담 및 전문 지원기관 연계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2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별표 1 중 총계 “270”을 “277”로 하고, 일반직 계 “266”을 “273”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5”를 “27”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

연구관 “74”를 “76”으로 하며, 행정주사 “29”를 “30”으로 하고, 전산주사 “3”을 “4”로 하며, 전산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70”을 “2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6”을 “26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1”을 “32”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4”를 “73”으로 하며, 행정주사 “23”을 “26”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2조제3항 관련)”을 “(제22조제3항 본문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신설한다.

별표 7의2의 제목 중 “(제22조제8항 관련)”을 “(제22조제8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6을 신설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통일부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정원 7명(부이사관 또

는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명)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은 2024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2명으로 본다. 직급이 상향 조
정되는 별표 4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하
며, 2024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
정주사 1명으로 본다.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6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그
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6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북
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장은 2025년 2월 2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장이 인도협
력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착지원과장이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빅데이터팀장은 2025년 4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빅데이터팀장이 정세분석국장을 보좌

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세분석총
괄과장이 보좌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정세분석국) ① (생략)	제7조(정세분석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 및 경제사회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사회분석과 및 빅데이터팀을 -----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신설>	⑦ 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기획 2. 북한 빅데이터 H/W 인프라 관리 운영 3. 북한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운영 4. 북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체계 개발 운영 5. 북한 빅데이터 시스템 거버넌스 구축·운영 6. 북한 데이터 품질관리 7. 내부 분석포털 및 대외 북한

	정보포털 관리
제8조(인도협력국) ① (생략)	제8조(인도협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인도협력국에 인도협력기획과·북한인권과·이산가족과·정착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인도협력기획과·북한인권과·이산가족과·정착지원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및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③ 인도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7.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

8. ~ 15. (생략) ④·⑤ (생략) ⑥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u> <u>의 보호</u> <u>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u> <u>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u> <u>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u> 16. (생략) <u>17. (생략)</u> <u>18. (생략)</u> ⑦ (생략) <u><신설></u>	8. ~ 1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3.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16. (현행과 같음) 20. (현행 제17호와 같음)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u>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장</u> <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기획</u> <u>및 운영계획 수립</u> 2. <u>북한이탈주민 위기 사례관리</u> <u>시스템 운영</u> 3. <u>북한이탈주민 위기대상자 상</u> <u>황관리 총괄</u> 4. <u>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예방</u> 5. <u>북한이탈주민 위기감지 지표</u> <u>발굴·운영</u> 6. <u>북한이탈주민 위기대상자 여</u>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부 관별 체계 운영 <u>7.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관련</u> <u>실태조사</u> <u>8. 북한이탈주민 긴급생계비·의</u> <u>료비 신청 지원, 일반 복지체</u> <u>계와 연계 관리</u> <u>9.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u> <u>및 통합사례관리위원회 운영</u> <u>10.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u> <u>의 보호</u> <u>11.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u> <u>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u> <u>원 및 거주불명 조사</u> <u>12.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과</u> <u>관련된 신변보호담당관 협조</u> <u>체계 구축·운영</u> <u>1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u> <u>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u> <u>역주민 소통·교류 지원</u> <u>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u> <u>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u> <u>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u> <u>15. 북한이탈주민 폭력 등 피해</u> <u>자 상담 및 전문 지원기관 연</u> <u>계</u>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	---	---------------------------	---

신·구정원대비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0	277	+7
일반직 계	266	273	+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5	27	+2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4	76	+2
행정주사	29	30	+1
전산주사	3	4	+1

전산주사보	4	5	+1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	.	270	273	+3
	.	.	.	.	
	.	.	.	.	
일반직 계	.	.	266	269	+3
	.	.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31	32	+1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74	73	-1
	.	.	.	.	
	.	.	.	.	
행정주사	.	.	23	26	+3
	.	.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	.	(제22조제3항 관련)	(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	.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 제3항 단서 관련)

총계	97
일반직 계	97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9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관	1
의무사무관	8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
행정주사	22
진산주사	2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2
행정주사보	13
농업주사보	1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간호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5
행정서기	1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간호서기	2
의료기술서기	3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
방호서기보	6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
운전서기보	2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8항 관련)	(제22조제8항 본문 관련)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6]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단서 관련)

총계	14
일반직 계	1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4
행정주사	4
행정주사보	2
전산주사보	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삭제